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2018. 9

산 업 통 상 자 원 부

목 차

I. 그간 논의 경과	1
II. 개정협상 주요 결과	2
1. 우리측 관심이슈	2
2. 미측 관심이슈	4
3. 이행 이슈	5

I. 그간 논의 경과

- (미측 요구) 美 대선 경선과정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 이후 對韓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폐기 위협하에 재협상 요구
 - * ('17.4.27 트럼프 대통령 언급사항) KORUS FTA was a horrible deal, and we are going to renegotiate that deal or terminate it.
- Lighthizer USTR 대표는 한미 FTA의 개정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 서한 발송('17.7.13)
- 1차('17.8.22) 특별회기 이후 2차('17.10.4) 공동위 특별회기 계기, 양국간 상호호혜성 강화를 위한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 * 동 계기 우리측은 한미 FTA 발효('12) 이후 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상호호혜적 성과를 미측에 설명
- (우리측 대응)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개정에 필요한 국내 절차 진행 및 완료
 - 경제적 타당성 검토(17.10-11월), 제 1차('17.11.10)/제 2차 공청회('17.12.1), 국회보고('17.12.18) 등 국내절차 진행 및 개정협상 대비
- (개정 협상) 1차('18.1.5, 미국), 2차(1.31~2.1, 한국), 3차(3.15~16, 미국) 협상 등을 통한 집중적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 도출('18.3.24)
 - 1~2차 협상계기 상호 관심사항(韓:무역구제, ISDS, 섬유원산지/美:자동차 관세·비관세, 이행이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 3월 중 3차 협상을 포함한 집중적인 협상(9차례 통상장관회담/유선협의, 5차례 수석대표간 협의, 분야별 기술협의)을 통해 협상범위 대폭 축소
- ⇒ 협상 범위가 축소된 상황 하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 계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 도출
 - * 양국 통상장관간 한미 FTA의 원칙적합의 도출 관련 공동선언문 발표('18.3.28)

II. 주요 협상 결과

1. 우리측 관심 개정이슈

ISDS 개선

- 개정협상의 결과로서 △ ISDS 남소 제한, △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
 - 투자자의 ISDS 남소 제한 요소, 본안 전 항변단계에서 중재절차 신속 종료 요소 등을 추가하여 정부의 응소 부담 완화
 -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위반 여부 판단에 공공복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 ISDS 남소 제한

- ①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진행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 개시/진행 불가
- ② 중재판정부가 본안 전 항변 단계에서 신속절차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명백히 법률상 이유(legal merit)가 없는 ISDS 청구 추가
- ③ 다른 투자협정 상의 분쟁해결절차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최혜국대우(MFN) 조항을 원용할 수 없음을 명확화
- ④ ISDS 청구시 모든 청구요소에 대한 투자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화
- ⑤ '설립 전 투자'를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허가 또는 면허 신청 등)를 한 경우로 제한하여 '설립 전 투자' 보호범위 확대 해석 방지

□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 ①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관련, '동종상황' 판단에 있어 달리 대우하는 것이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의해 정당화 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

② 당사국의 행위가 투자자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자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최소기준 대우 위반이 아님을 명확화

□ 향후 ISDS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투자챕터 추가 개정근거 마련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개선

□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합의로 미국 수입규제 조사관행 명문화를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 현지실사 절차 규정

- 현지실사 개최 일자 사전 통지, 실사 이전 실사 개요 및 준비 필요 서류 사전 통지, 실사 이후 정보 검증 결과 등을 설명하는 서면 보고서 작성 등 절차 도입

□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 계산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공개, 수출기업에게 공개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제공 등 규정 도입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

□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업계건의 반영)의 경우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특정 최종재 생산시 역내산으로 인정 추진

* (현재 한미 FTA 섬유·의류 원산지 기준) 섬유·원사(yarn)부터 역내산 사용, 역내 생산시 원산지 인정(원사 기준)되나 일부 공급부족 품목에 대해 예외 인정

- 미측은 해당 원료의 역내산 공급부족 여부 판단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공급부족 판정시 한미 FTA 섬유·의류 원산지 기준 변경

* 美 既체결 FTA의 경우 동 절차 진행에 1년2개월~최장 6년까지 소요된 사례

- (역내 공급부족 여부 입증을 위한 美 국내절차) Public Comment, USITC 경제적 영향 평가, ITAC(업계 무역자문위) 검토, 의회 검토 등

2. 미측 관심 개정이슈

자동차 관세

- 미측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1.1.1 철폐)에서 추가 20년(‘41.1.1 철폐) 연장(관세 25%를 ‘40년까지 유지)
 - * (대상 세번) 87042100(디젤/5톤이하), 87042250(디젤/5-20톤), 87042300(디젤/20톤초과), 87043100(가솔린/5톤이하), 87043200(가솔린/5톤초과), 87049000(기타)
 - ** 최근 3년간(‘14~’16) 화물자동차 6개 세번에 대한 미국의 對韓 연평균 수입금액은 약 4만불

자동차 안전기준

- 연간 제작사별 50,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기존 25,000대)
 - * (‘17년 美 Big 3사 對韓 수출 현황) 포드 8,107대, GM 6,762대, 크라이슬러 4,843대
- 우리정부에서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해석을 요청할 경우 기존 미국 정부의 ‘회신의무’ 대비 ‘신속한 회신의무(without undue delay)’로 개정
-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시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국내규정* 상 자기인증한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부품은 부품자기 인증을 한 것으로 간주해 왔는 바, 이를 개정협정의 결과로 반영
 - * 자동차 관리법(제30조의 2 제5항) 상 부품자기인증 조항
 -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사후관리 권한을 명시하고 예외적인 긴급조치 권한을 규정
-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한 대한민국인증(KC)마크 표시의무는 유지하되 표시 방식상의 부담을 완화
 - * 해당 부품이 장착되는 △차량을 추적가능한 경우에 한해 △최종소비자가 볼 수 있는 포장재에 △스티커 형식으로 KC마크 표시를 허용

자동차 환경기준

- 연비/온실가스 기준 관련, 차기기준('21-'25) 설정시 美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 유지 ※ 현행('16~'20) 기준 유지
 - 미국 포함 국제적인 온실가스 기준 동향 등을 감안하여 차기 기준 설정 예정(향후 의견수렴 예정)
 - 현행('16~'20)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차기('21-'25) 기준에서도 유지 하되, 소규모 제작사의 상세 기준 및 완화 비율은 추후 확정
 - * 한국내 자동차 판매량('09년 기준)에 따라 4,501대 이상 판매시에는 '일반 제작사', 4,500대 이하 판매시에는 '소규모제작사'로 분류
-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 확대(현행 14.0g/km에서 17.9g/km)
 - * 통상적인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없는 연비 향상/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시 추가 크레딧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
- 휘발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시험절차 및 방식을 미측과 조화
 - 기존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 휘발유 차량 배출가스 기준은 미국 기준과 조화하기로 되어 있는 바, 우리측 의무이행 사항을 재확인

3. 이행 이슈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

- 현재 개정검토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 개정(안)을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18년말까지 마련 합의('18.10월말까지 개정초안 공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원에서는 '18.12.31까지 동 제도 시행을 유예 하고 추가적인 개정사항을 검토 중인 상황

원산지 검증

- 양국 공통 적용 원산지검증 원칙 합의, 원산지검증 작업반 신규 설치

4. 향후절차 등 관련

- 양측간 서한 교환을 통해 행정부 차원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19.1.1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 국내절차 진행기간 중 발생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절차 회부보다는 협의를 통해 해결책 모색

2018
통상·무역정책 지역설명회



MEMO

A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taking notes or recording the content of the meeting.

수입규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

안재현 주임



수입규제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Contents

- I. 수입규제 개요
- II. 외국의 對 한국 수입규제 조치 총괄
- III. 수입규제 대응 : 대응 사례
- IV.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한국무역협회 (KITA)
 - KPMG 삼정회계법인
- IV. 향후 계획

I. 수입규제 개요

▣ 수입규제의 정의

- 수입규제(Import Restrictions)란 수입국이 공정경쟁 또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를 제한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다양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임**
- 여러 형태의 수입규제 중 **무역구제제도(Trade Remedy)**라고 표현되는 **반덤핑 조치(Anti-dumping Measures), 상계 조치(Countervailing Measures),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는 WTO 협정 및 국별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대표적인 조치임

반덤핑 (Anti-dumping)	상계관세 (Countervailing)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수입국으로 판매되는 특정 상품의 '수출 가격'이 수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일 품목의 '국내 가격'보다 낮은 '덤핑(dumping)'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실질 적인 피해를 겪을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를 부과하여 덤핑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	수출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된 물품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물품에 대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하여 보조금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	특정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여 동종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

II. 외국의 對 한국 수입규제 조치 총괄

▣ 총 25개국 194건의 對한국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 중 ('18년 8월 기준)

- (조치별) 반덤핑 154건, 세이프가드 31건, 상계관세 9건
- 반덤핑 비중이 79%로 대다수, 상계관세 5%, 세이프가드 16%

규제형태	건 수 (조사중)	비중
반덤핑	154 (16)	79%
상계관세	9 (2)	5%
세이프가드	31 (6)	16%
합계	194 (24)	100%

- (국가별) 미국(39건), 인도(29건), 중국(16건), 터키(15건), 캐나다(13건) 順
- 세이프가드는 터키·베트남·인니 등 신흥국가 發 중심이었으나, 금년에는 미국·EU 등 선진국도 조사 개시

분류	미국	인도	중국	터키	캐나다	브라질	태국	인니	말련	호주	EU	기타	합계
규제중	36	26	13	11	10	11	8	7	6	6	5	31	170
조사중	3	3	3	4	3	-	-	-	-	1	1	6	24
합계	39	29	16	15	13	11	8	7	6	7	6	37	194

II. 외국의 對 한국 수입규제 조치 총괄 (계속)

▣ 총 25개국 194건의 對한국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 중 ('18년 8월 기준)

· (분야별) 철강, 금속 및 화학제품이 전체의 78.9% 차지

- 철강·금속 94건(48.5%), 화학 59건(30.4%), 섬유 12건, 전자전기 11건, 플라스틱·고무 6건, 기타 12건

- 철강·금속은 미국(28건: 29.8%)이, 화학은 인도(18건: 30.5%)가 주도

구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계	비중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철강·금속	66	4	6	2	12	4	94	49%
화학	45	9	-	-	3	2	59	30%
플라스틱·고무	3	2	-	-	1	-	6	3%
섬유	12	-	-	-	-	-	12	6%
전자전기	7	-	1	-	3	-	11	6%
기타	5	1	-	-	6	-	12	6%
합계	138	16	7	2	25	6	194	100%

II. 외국의 對 한국 수입규제 조치 총괄 (계속)

▣ '18년 상반기 중 7개국 13건의 수입규제 신규조사 개시

· (국가별) 인도, 터키(각 3건), 미국, 캐나다(각 2건), 호주, EU, 중국(각 1건)

· '18년 신규로 조사대상이 된 13건 중 반덤핑 제소가 8건, 세이프가드 3건, 상계관세 2건

- 철강·금속은 미국(28건: 29.8%)이, 화학은 인도(18건: 30.5%)가 주도

· (품목별) 화학제품 6건, 철강제품 6건, 기타 1건

<2018년 대한 수입규제 신규조사 개시 건>

연번	규제국명(건수)	품목명	규제유형	조사개시일
1	미국(2)	대형구경강관	반덤핑, 상계관세	'18.1.17
2	인도(3)	SunDust Control Film	반덤핑	'18.1.17
3		EVA시트	반덤핑	'18.4.4
4		에폭시 수지	반덤핑	'18.4.5
5	터키(3)	PET기타	세이프가드	'18.2.23
6		아크릴모드	반덤핑	'18.3.22
7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18.4.27
8	호주(1)	A4용지	반덤핑	'18.3.19
9	EU(1)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18.3.26
10	중국(1)	페놀	반덤핑	'18.3.26
11	캐나다(2)	냉연강재	반덤핑, 상계관세	'18.5.25

II. 외국의 對 한국 수입규제 조치 총괄 (계속)

▣ 하반기 전세계 수입규제 전망

□ 철강 산업

- 미국 : 미 철강업계.의회 중심으로 중국산 및 한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강력 대응 중
 - 한국산 관련 정부보조금 및 초과생산으로 낮은 가격 덤핑 진행 중 비판
 -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가공하여 미국으로 재수출하고 있다 비난
- 캐나다 : 미국 철강 관세부과에 따라 저가 철강 제품 캐나다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철강 수입 단속을 강화할 전망
- 태국 : 철강제품 만성 무역적지에 시달리고 있어 수입규제 제소 가능성 높음
 - 태국 철강 수입 비중 : 일본 43%, 중국 26%, 한국 14.9%
- 인도 : 인도 내 철강 수요량 증가로 인해 철강 수입규제는 완화 기조 보임
- 호주 :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추가제소 및 기 반덤핑 연장요청 예상 중
- EU : 철강 수입감시제도 운영중, 철강제품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II. 외국의 對 한국 수입규제 조치 총괄 (계속)

▣ 하반기 전세계 수입규제 전망

□ 화학 산업

- 베트남 : '18.3.7일부 화학비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별도 부과 실시
- 브라질 : 니트릴 고무에 관련한 반덤핑 조사 진행중으로 '18.9.2.까지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중
- 인도 : 세계7위의 석유화학 산업 생산량을 보유하는 업체들의 입김이 작용하여 수입규제 강화기조 유지 전망
- 중국 : 화학산업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중국 정부의 반덤핑 조치 확대 가능성 높음
- 태국 : 중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금지로 인해 태국 수입량이 급증
- GCC : 자국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수입규제 가능성 상시 존재

□ 자동차 산업

- 멕시코 : 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법을 변경하여 일반관세를 부과하여 비 FTA 체결국인 한국 수입품에 타격 예상
- 미국 : 자동차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 진행 중, 미국 내 생산설비 확장 노력 중
- 인도네시아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대인니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수입규제 제소 주의

III. 수입규제 대응 : 대응사례

▣ 정부의 수입규제 대응

- 업계와의 대책회의, 조치국 조사기관과의 협의, 대외 설득활동 등을 통해 對한국 수입규제 조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정부의 주요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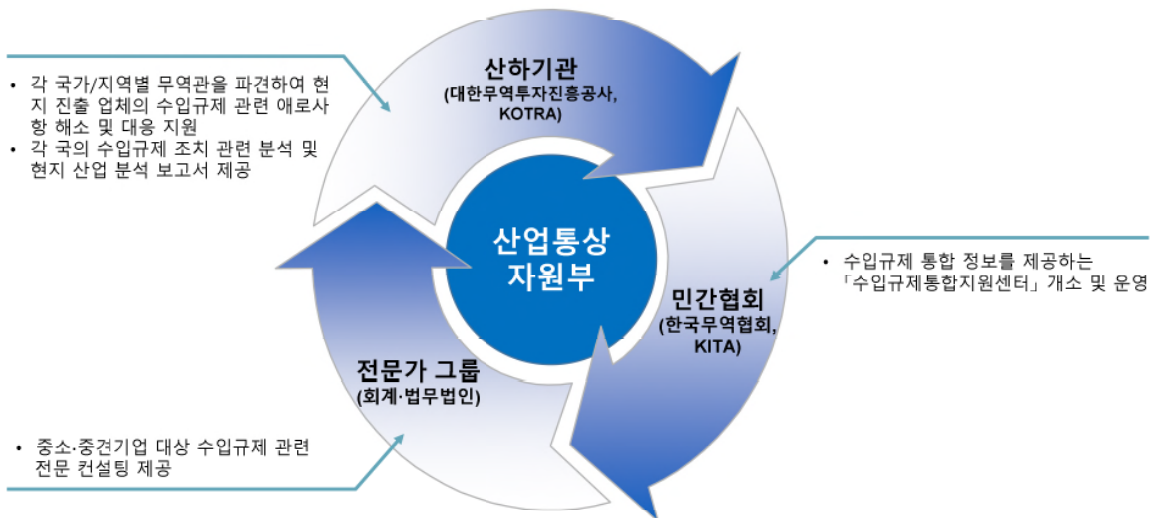
양자 및 다자 차원 문제 제기
정부 입장서 발송
고위급 서한 발송
공청회 참석
조치국 정부 및 업계 대상 아웃리치(대외 설득활동)

[대응 사례: EU 철강 세이프가드(SG)]

일자	대응 활동
'18.3.26	EU 집행위 철강 SG 조사 개시
'18.3.29/4.10	민관 대책회의 개최
'18.4.13	정부의견서발송
'18.4.23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정례회의 계기 우리측 입장 개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미충족, EU경제에 부정적 영향 등
'18.5.28~6.1	통상교섭본부장, EU통상집행위원 및 폴란드, 독일, 체코 등 EU회원국 장·차관과 양자면담 계기 아웃리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철강제품 (특히 현지 투자공장 소재용 철강제품)에 대한 조치 제외 요청 등
'18.6.28	고위급 서한 발송
'18.7.18	EU 집행위 잠정조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정조치 부과: 7.19일부터 200일간('19.2.4限)
'18.8.11	정부입장서 추가 발송
'18.9.12	민관합동대표단, EU집행위 주관 청문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산입부 산통상질서협력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업계(포스코,현대제철 등) 및 협회(철강협회) 등
향후 대응	한-EU FTA 이행위원회 등 가용채널을 모두 활용하여 적극 대응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FTA 무역구제이행위 (18.11), 한-EU FTA 무역위 (18.12),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18.10예정) 등

IV.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

-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기관(KOTRA), 민간협회(KITA), 전문가그룹(회계·법무법인)과 협업하여 수입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IV.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 (계속)

▣ KPMG 삼정회계법인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제공
- 주요 컨설팅 영역:



- 2017년 반덤핑, 상계관세, 수출관세 등과 관련한 컨설팅 신청 총 28건에 대하여 대응 보고서를 제공하였음
- 2018년 8월 기준 컨설팅 신청 및 보고서 제공 현황은 아래와 같음

No.	보고서 번호	보고서 명
1	KITA-TR-18-001	S사 대구경강관
2	KITA-TR-18-002	인도의 반덤핑 재심 제도와 관세율 재산정
3	KITA-TR-18-003	L사 중국향 황산
4	KITA-TR-18-004	S사 미국향 기계구조용인발강관
5	KITA-TR-18-005	대구 소재 섬유기업 대상 터키 반덤핑 교육
6	KITA-TR-18-006	S사 HS Code 변경
7	KITA-TR-18-007	V사 중국산 단조피팅 US AD에 따른 밸류체인 재편
8	KITA-TR-18-008	S사 중국산 원재료의 301조 대상여부와 밸류체인 재편



V.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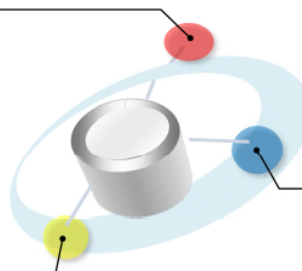
- 2019년도에도 對한국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민관합동 대응, 정책적 지원, 전문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민관협력

- 산업별 맞춤형 설명회 개최를 통한 수입규제 대응 지원
-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세미나, 교육 등 지속 개최하여 우리 업계의 수입규제 대응력 제고
- 조사개시, 예비, 최종판정 등 주요 일정에 맞춰 분과 회의를 신속 개최
- 수입규제 협의회, 비관세장벽 협의회 등 민·관합동 대응전략 논의 및 수립

정책 지원

- 양자 및 다자 통상 및 외교 채널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리 입장 전달
-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도 적극 검토
- 주요 공청회 등에 민관대표단 파견 지원



전문컨설팅

- 피소 중소·중견기업 방문 상담 및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수입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사항 해소
-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산업 피해 최소화 노력



감사합니다

2018
통상·무역정책 지역설명회



MEMO

A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intended for taking notes or a memo.